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6. 24.(목) /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·과장 배성호, 사무관 엄성열, 주무관 김지현 ·☎ (044) 201-3342, 3345
보도일시		2021년 6월 2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4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,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

- 부정청약,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 수사의회 -
-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, '부정청약', '불법공급'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, 이중 299건을 수사의회했다고 밝혔다.

□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,

① (통장매매)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,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,

* 청약브로커가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,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

② (위장전입)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,

* 실거주 없이 주택, 상가,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(주민등록법 위반)에 해당하며, 부정한 방법(위장전입)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

③ (불법공급)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,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,

* 당첨취소·미계약·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,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(1인 1주택)

④ (부적격청약)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.

*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,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 체결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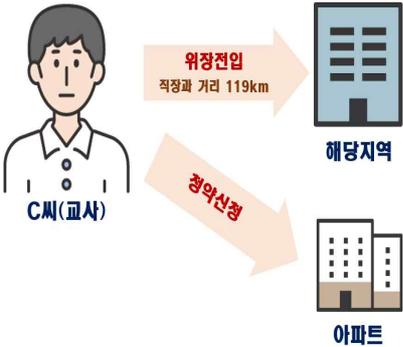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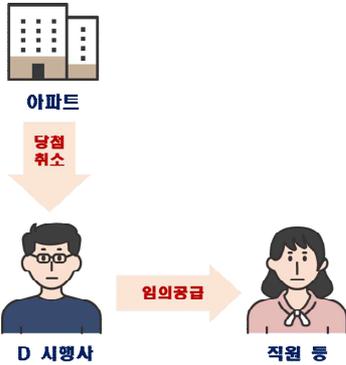
□ 이 중,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(242건) 및 불법공급(57건)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, 주택법 위반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(주택환수)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.

○ 한편, 지난해 12월 '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'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, 현재 53건의 수사결과(기소의견)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,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'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'를 대상으로 부정청약·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,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엄성열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p>청약통장 매매</p>	 <p>청약 브로커 34건 대리청약 아파트 10건 당첨</p>	<p>청약브로커와 공모하여 대리청약·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</p> <p>A씨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(○○○, ○○○)가 대리계약을 체결했으며,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하여 10건이 당첨되는 등(○○○은 인근 단지에서도 대리계약 체결) 통장매매 의심</p>
<p>청약자격 매매</p>	 <p>장애인 국가유공자 자격 매매 청약브로커 대리청약</p>	<p>청약브로커가 장애인·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하여 대리 청약하는 경우</p> <p>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B씨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며, 이중 2명(장애인1, 국가유공자1)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컴퓨터로 6건의 일반청약 당첨도 확인되어 청약브로커에 의한 자격매매 의심</p>
<p>위장전입</p>	 <p>위장전입 직장과 거리 119km 해당지역 아파트 C씨(교사) 청약신청</p>	<p>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</p> <p>♣♣군 ◇◇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♣♣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♣♣으로 위장전입했으며, ♣♣에서 ◇◇중학교까지의 거리는 편도 119km(1시간 40분 소요)로서 출·퇴근이 곤란한 상황</p>
<p>불법공급</p>	 <p>아파트 당첨 취소 D 시행사 직원 등 임의공급</p>	<p>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하지 않고, 당첨취소 물량을 빼돌려 지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</p> <p>D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동·호수 추첨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, 추첨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공급</p>